

퇴직연금제도 도입 지원

● 퇴직연금제도 도입 · 운영 교육

사업개요 퇴직연금제도 도입이 저조한 중소·영세사업장을 대상으로 퇴직연금제도 도입·운영 지원을 위한 교육사업

사업수행 주체 외부 노·사 단체, 전문가 단체에 민간위탁

- 교육내용**
- 도입지원 : 퇴직연금제도 미도입 사업장(100인 미만)을 대상으로 퇴직연금제도 개요, 도입 절차, 퇴직연금제도 규약 작성 등 교육
 - 운영지원 : 퇴직연금제도 기도입 사업장(100인 미만)을 대상으로 퇴직연금제도 운영방법, 적립금 운용 등 교육

● 근로복지공단 퇴직연금사업 운영

사업개요 퇴직연금제도 도입·운영이 어려운 중소·영세사업장의 퇴직연금제도 도입을 지원하기 위하여 퇴직연금 공적서비스 제공

사업대상 30인 이하 사업장 및 소속 노동자

사업내용 제도설계, 규약작성·신고 지원, 가입자교육, 운용지시 전달 등 운영 관리업무 수행



● 지원문의

-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: 1350
- 근로복지공단 : 1661-0075
- 근로복지공단 퇴직연금홈페이지 : pension.kcomwel.or.kr